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 10. 17. (월) 14:00**

**제주연구원 대강당 (3층, 잇세옴)**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제주연구원**



# 인 사 말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해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능동적인 세외수입 창출 활동으로, 기부문화 확대와 1차 산업과 연계한 답례품 발굴·개발 등으로 이어져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대상을 재외도민과 관광객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도권을 넘어 전국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제주가 준비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자체간 갈등 발생 우려와 기부금 모금이 집중되는 데 따른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 기부금 모금 공감대 형성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섬이자 전 국민의 마음의 고향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정은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주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 축 사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입니다.

고향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며, 언제나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한 그림자입니다. 먼 가지로 뻗어나가 여러 곳에서 일상을 영위하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뿌리는 고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재일제주인들의 기부와 선행을 경험했기에, 고향을 떠난 이들의 고향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만, 또 우려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를 위한 기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또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동체 문화를 고취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체 모금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로 인한 여러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늘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모아, 제주를 위한 효과적인 고향사랑 기부제를 만들어 가는 정책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을 비롯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참가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 철 남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오늘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만을 생각하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생활자치 등 도민 행복만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이 뜻깊은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제 발제를 해주시는 성인재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 팀장님,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님, 저희 연구원의 주현정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토론의 진행을 이끌어주실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님, 토론을 해주시는 오경환 서울제주도민회 부회장님, 채종우 도 세정담당관님, 임정현 도의회 정책연구위원님,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님, 고경업 제주일보 전략사업본부장님, 이석근 도 농업인 단체협의회 사무처장님과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항상 뭉클함을 줍니다. 특히 타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더 아련함이 클 것이며 그 분들이 고향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내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만사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외 제주인들이 고향 제주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지역의 주민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제주지역의 효과는 대단할 것이고 제주도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주는 힐링의 고향, 마음의 안식처인 제2의 고향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애정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선도적 모범지역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

제주연구원장 양 덕 순

#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 1 토론회 개요

- 주 제 :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 방안
- 일 시 : 2022. 10. 17.(월) 14:00 ~ 17:00
- 장 소 : 제주연구원 대강당(3층, 뒷세오름)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주 관 : 제주연구원
- 참 석 : 발제 · 토론자, 도 · 행정시 공무원 및 도민 등

## 2 세부 내용

- 인 원 : 좌장 1인, 발표자 3인, 토론자 6인
- 좌 장 :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 발표자
  - (발표 1) 성인재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팀장)  
· (주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
  - (발표 2)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 (주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 (발표 3)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 및 과제
- 토론자
  - (패널 1) 오경환 (서울제주도민회 부회장)
  - (패널 2) 채종우 (도 세정담당관)
  - (패널 3) 임정현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 (패널 4)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 (패널 5) 고경업 (제주일보 전략사업본부장)
  - (패널 6) 이석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3

## 주요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30~14:00 (30')	○ 등 록	
14:00~14:10 (10')	○ 개 회	
	○ 개회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축 사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환영사 : 제주연구원장	
14:10~14:15 (05')	○ 발제, 토론자 등 참석자 소개 ○ 참석자 사진촬영	사회 (제주 연구원)
14:15~15:15 (60')	○ 발 제 1) 성인재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팀장) -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	
	2)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3)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 및 과제	
15:15~15:25 (10')	○ 휴 식	
15:25~16:25 (60')	○ 토 론	좌장
	1) 오경환 (서울제주도민회 부회장)	
	2) 채종우 (도 세정담당관)	
	3) 임정현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4)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5) 고경업 (제주일보 전략사업본부장)	
6) 이석근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처장)		
16:25~16:55 (30')	○ 질의 · 답변	좌장
16:55~17:00 (05')	○ 폐 회	사회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목 차 ||

## <발표 자료>

-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 ..... 9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 21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 및 과제 ..... 47

## <참고 자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69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80





#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팀장 성 인 재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 고향사랑 기부제란?


### 고향사랑 기부제란?

-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법 제정('21.10월), 시행('23.1~)



#### 운영 체계



- 1 모금홍보 (지자체)
- 2 기부 (개인)
- 3 접수·확인 (지자체)
- 4 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
- 5 모금액 사용 (지자체)
- 6 결산 (기금 심의위원회)

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 도입배경

▶ 지역 인구감소(2000년 ~ 2020년 간)



수도권 인구 18% 증가  
인구 10만 이하 시군 인구 18% 감소

- 전국 시군구의 66%(151개) 인구감소

▶ 지역경제 격차 심화



수도권  
지역 생활 여건 악화  
지역경제 침체 지속  
질 좋은 일자리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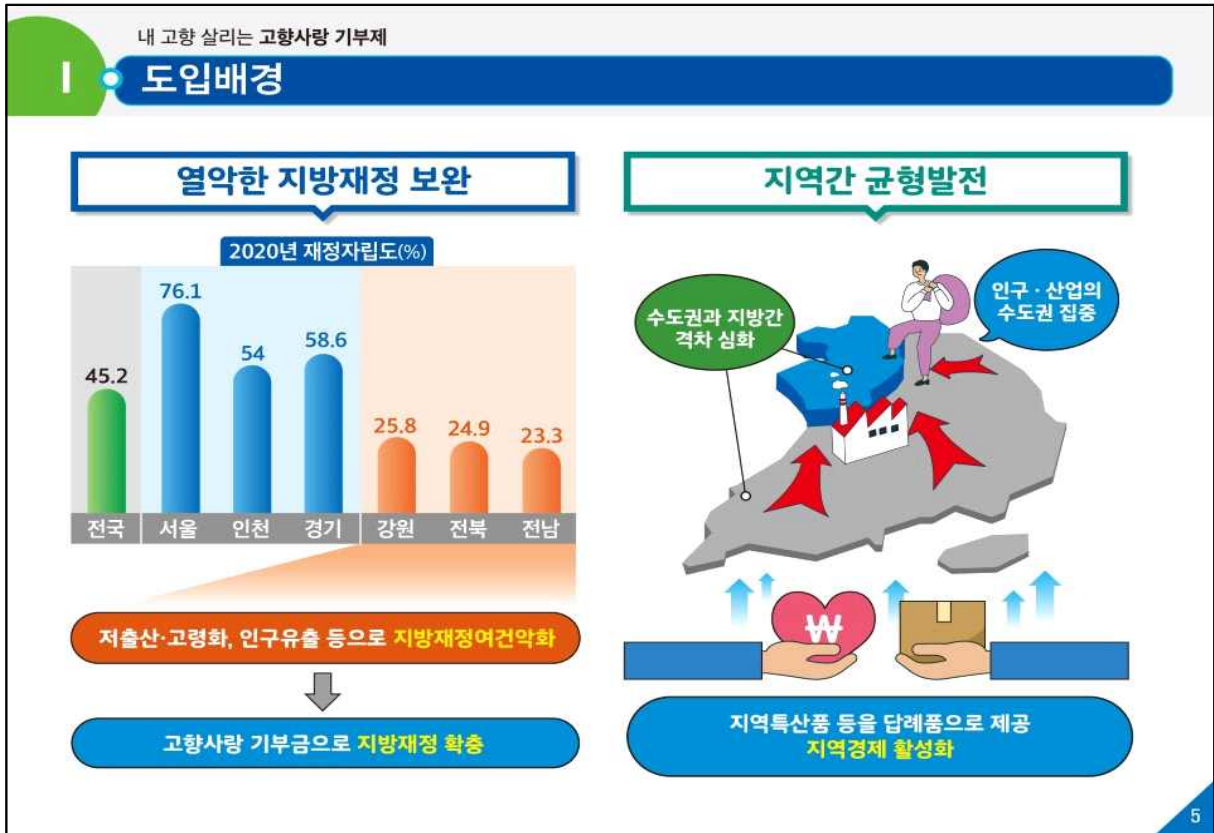
▶ 비수도권 청년(20대) 순유출



연도	순유출 인원
2015	4.0만명
2016	5.1만명
2017	5.4만명
2018	6.6만명
2019	7.6만명

※ 출처 : 통계청

4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II 주요 내용 - 기부주체·한도액

#### 기부자·기부처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의 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기부



####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연간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합산




7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II 주요 내용 - 기부자(세액공제)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예정)

기부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
10만원 초과 ~	1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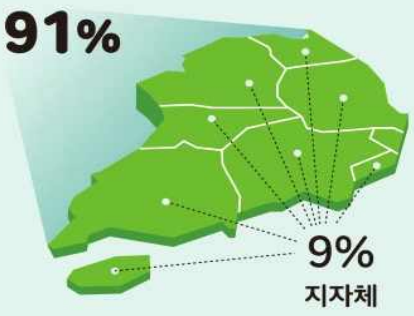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세액 부담 비율

- 국가 91%, 지자체(주소지) 9%

국가  
**91%**



9%  
지자체

8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II 주요 내용 - 답례품·사업시행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해 답례품을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조례로 정함)

※ 답례품목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육성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9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II 주요 내용 - 모금 홍보·처벌

**기부금 모금·홍보**

- 광고·정보통신 매체 활용(개별모금활동 불가)

**모금방법 위반**

- 호별 방문, 개별 통화·서신송부, 동창회·향우회, 개인 SNS 등

**규정 위반시 처벌**


**개 인**

- 누구든지 타인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시
-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적극적 권유·독려 시
- 모금방법을 위반하여 기부금 모금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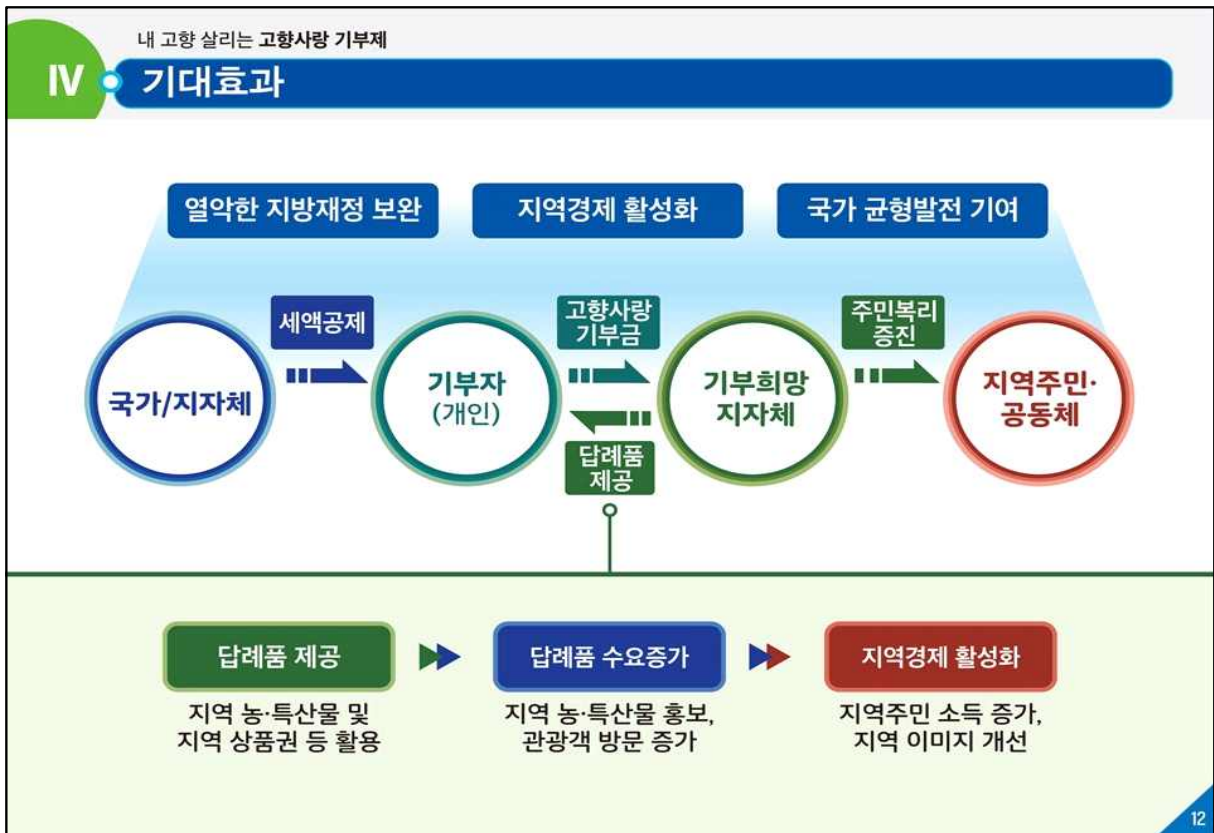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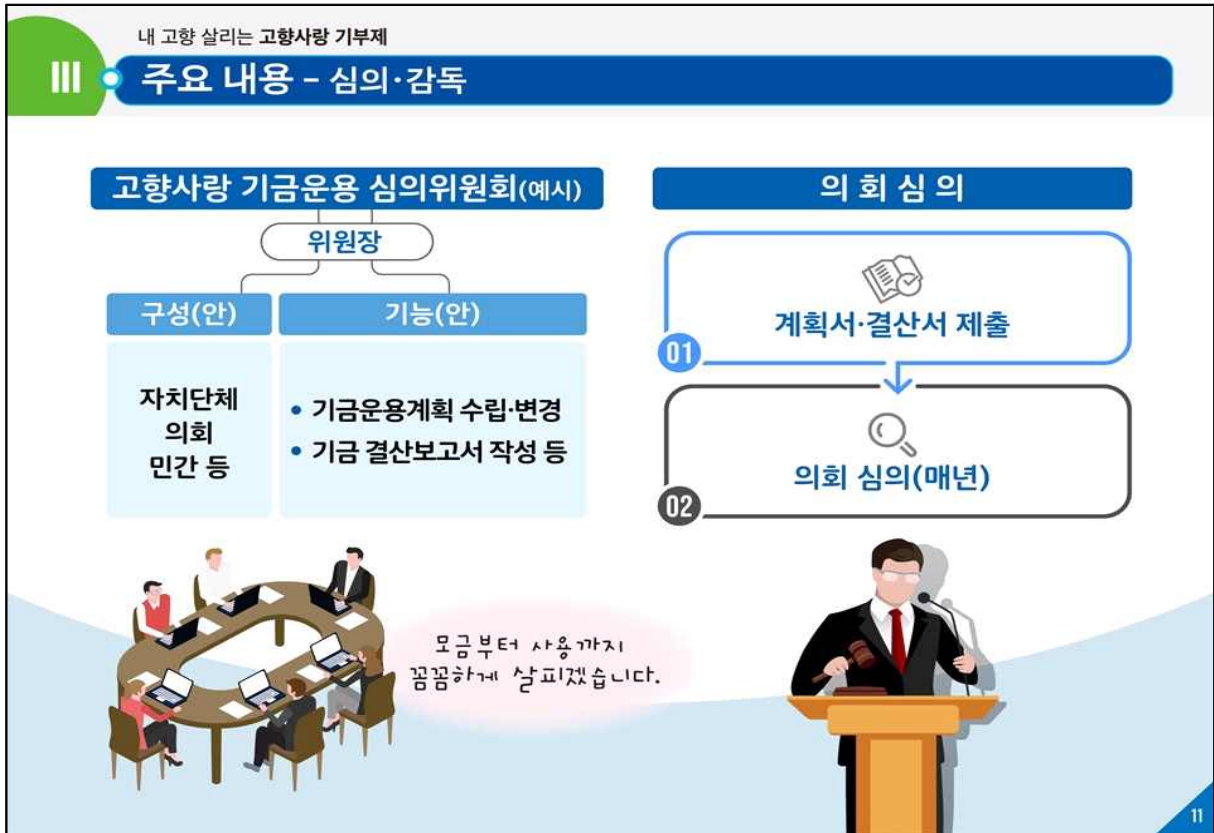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

- 법을 위반한 자치단체는 기부금 접수 제한
- 위반사실 공표, 다음 회계년도 1년 이내 기부금 모금 제한



10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V • 향후 계획

### 관련법령의 제정 등

시행령 제정  
( '22. 7월 예정)

조례 제정  
( '22. 하반기)

시스템 구축  
( ~ '22. 12월)


###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운영

-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 정보·아이디어 공유
-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지자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V • 향후 계획

### 시행령 제정 내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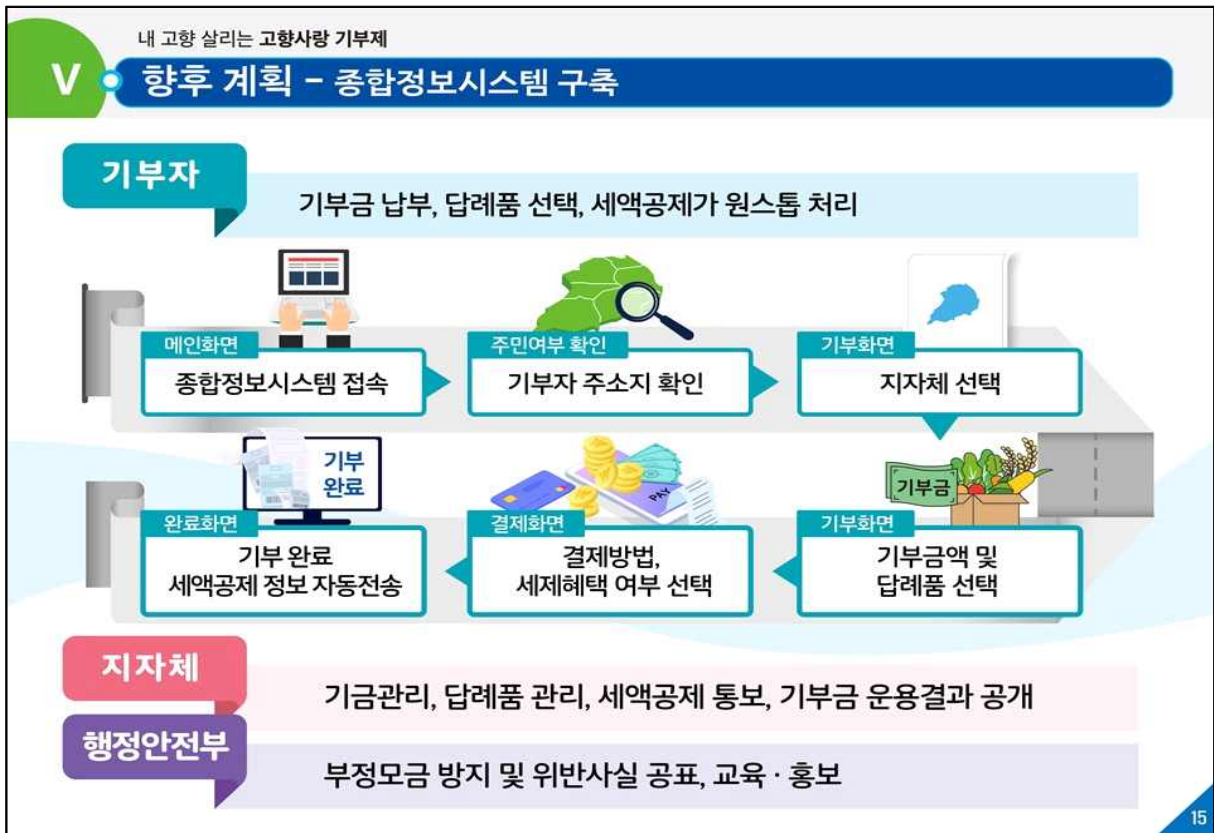
- 모금 제한 기간(최고 12개월 제한)
- 모금 가능한 광고매체 유형
- 모금 접수 방법 및 절차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 기금운용 및 총당비용(100분의 15이내)
- 정보시스템 구축
- 결과 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 고유 식별 번호의 처리

### 조례 제정 내용(안)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용도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 답례품의 종류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 답례품 제공 제외 업체




14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신 두 섭





행정안전부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2. 10. 17.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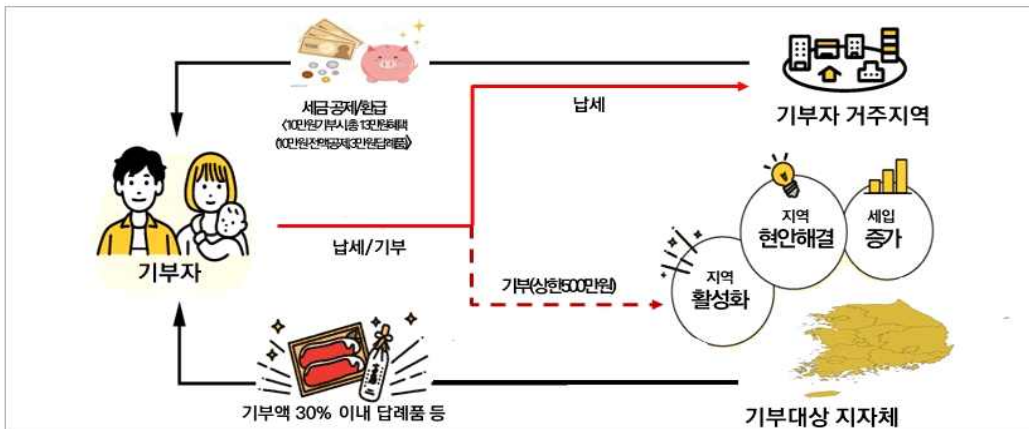
- I.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개요
- II.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III.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향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V. 제주도의 대응책

# I.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개요

## I.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개요

### 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주요 내용

- 1.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에 사용
- 2. 지방 재정에 확충, 지역 자원(유무형의 특산물등)을 활용, 답례품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3.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혜택



## I.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개요

### 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1) 기부자 및 기부처 : 기부자는 개인(법인 불가), 기부처 : 지자체(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2) 기부액 한도 : 연간 500만원(지자체 합산)
- 3)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기부액 10만원 이하 100%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 4) 세액 분담 비율 국가 91%, 지자체 9%

#### 답례품과 사업시행

- 1)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위한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 관할구역 생산 및 제조물품, 관할구역 통용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품목(조례)
- 2) 주민복지증진 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와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지 증진

4/45

## I.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개요

### 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주요 내용

#### 모금 홍보와 처벌

- 1) 광고와 정보 통신 매체 활용(개별모금활동 불가)
- 2) 모금방법 위반 : 호별 방문, 개별통화와 서신송부, 동창회 및 향우회, 개인 SNS 등

#### 기대 효과

- 1)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 2) 답례품 제공(지역 농특산물 및 문화관광상품 등 활용, 관광객 방문 증가, 지역주민 소득 증가와 지역 이미지 개선)

5/45

## II. 최근동향 및 관련현황

### II. 최근 동향 및 관련현황

1. 현재까지의 진행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관련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제정(☉, '21.9월, 국회 의결)</li> <li>- 시행령(☉), '22. 9월 13일 공포</li> <li>- 조례(△), 참고 조례안 마련 및 설명회 개최(9.24.)</li> </ul>	- 시도연구원 등 제도 운용 방안 의뢰 및 연구 진행 중
답례품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지자체별 민간 사업자에 의뢰 중</li> <li>- (●)농협 등 농축수산물 답례품 자체 발굴 중</li> </ul>	- 지자체가 가장 어려워 하는 상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 지자체 연계 홍보 방안 구상 중</li> <li>- 지자체별 TF팀에서 관련 포스터 제작 및 홍보 중</li> <li>- 농협에서 적극적 홍보 중</li> </ul>	- 구전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개최 등 ex.) '22 A FARM SHOW창농귀농 고향사랑박람회: 고향사랑기부금 특별부스 설치(VIP참석)
종합포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LID에서 종합포털 구축 중 (지자체와 협약, ~'22년 12월말까지)</li> </ul>	- 지자체 독자 포털 구축 및 운용 비용 감안

키워드 : 고향사랑 기부금  
검색기간 : 2022.1.1 ~ 8.26  
뉴스 데이터 건수 : 360건

## II. 최근 동향 및 관련현황

### 2. 한일제도 비교

항목	고향사랑기부금제	고향납세제도
도입방식	-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	- 지방세법 소득세법에 공제조항 신설
기부대상	- 거주 지방자치단체를 기부대상에서 제외 - 개인만 기부가 가능함. 법인은 강제모집과 준조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할 수 없도록 함	- 거주 지자체에 기부 가능. 다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없음 - 개인 기부만 인정되며, 법인 기부는 다른 제도로 인정함
기부상한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 상한액 없음(다만, 공제상한액은 있음)
재원	-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소득세)이 중심 (중앙 => 지방 이전(91%), 지방 => 지방이전(9%))	- 지방에서 지방으로 재원이전(주민세)이 중심 (중앙 => 지방이전(소득세율) 약 23%, 지방 => 지방이전(주민세) 약 77%)
부작용방지방안	- 강제모집 및 적극적인 권유 금지 - 형사처벌	- 고향납세 지정제도 규정
기부동기	- 답례품, 사용처 및 고향이나 선호하는 지자체를 응원하는 마음	- 답례품, 사용처 및 고향이나 선호하는 지자체를 응원하는 마음
정보시스템	- 정부에서 구축예정: 기부 원스톱절차 서비스 제공	- 민간기업에서 구축 • 고향납세민간웹사이트 12곳 이상 • 원스톱 절차 서비스 제공, 지방홍보
세액공제	-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는 전액 • 10만원초과 ~500만원 이하는 16.5%	-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변동(예) • (소득) 3,000만원인 경우 28만원 • (소득) 5,000만원인 경우 61만원 • (소득) 7,000만원인 경우 108만원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 비용을 제한 - 지역화폐 사용을 인정	-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 비용을 제한함 - 지역화폐 사용 불가능함

자료 : 신승근(2022)에서 재인용 및 필자 수정

8/45

## II. 최근 동향 및 관련현황

### 3. 일본의 고향납세 최근동향('22.7.29)

일본의 경우, 2014년 이후 7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7년 연평균 증가율 4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모금액	81.4	77.0	102.2	121.6	104.1	145.6	388.5	1,652.9 (286.7)	2,844.1 (501.2)	3,653.2 (705.7)	5,127.1 (1,140.7)	4,875.4 (1,166.7)	6,724.9 (1,808.5)	8,302.4 (2,392.0)
모금건수	5.4	5.6	8.0	10.1	12.2	42.7	191.3	726.0 (147.7)	1,271.1 (256.7)	1,730.2 (376.1)	2,322.4 (581.0)	2,333.6 (594.0)	3,488.8 (1,006.5)	4,447.3 (1,401.1)

주 : 1. 고향납세수입액 및 건수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을 제외한 고향납세로 인정된 것만 계산  
2. '11년 동북지방 대지진 관련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3. ( ) 내 값은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의 이용 실적임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2. 7.29. 기준)

9/45

## II. 최근 동향 및 관련현황

### 3. 일본의 고향납세 최근동향 ('22.7.29)

####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처 선택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 등)의 선택		2022년 결과 단체수(비율)	2021년 결과 단체수(비율)
- 선택 가능으로 답한 단체의 선택 가능 범위	선택가능	1,746(97.7%)	1,736(97.1%)
	선택불가능	42(2.3%)	65(2.9%)
	분야 선택 가능	1,698(95.0%)	1,673(93.6%)
	구체적 사업 선택 가능	460(25.7%)	449(25.1%)
	* 클라우드펀딩형	318(15.9%)	285(15.9%)

#### 고향납세 사용처 분야의 구체적 내용(단체수)

건강, 의료, 복지	1,443	스포츠, 문화진흥	1,169
교육, 인재육성	1,419	마을만들기, 시민활동	1,144
아동, 육아	1,383	관광, 교류, 정주촉진	1,088
지역, 산업진흥	1,314	안심, 안전, 방재	859
환경, 위생	1,233	재해지원, 부흥	300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2. 7.29. 기준)  
\* %는 전단체(1788단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10/45

## II. 최근 동향 및 관련현황

### 3. 일본의 고향납세 최근동향 ('2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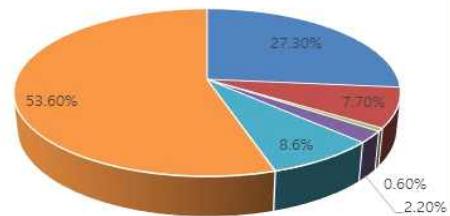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2014년 이후 7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7년 연평균 47%증가율)

(단위: 백만엔)

구분	금액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2조사결과	'21조사결과
답례품 조달비용	226,733	27.3%	26.5%
답례품 배송비용	63,686	7.7%	7.7%
홍보비용	4,923	0.6%	0.6%
결제 등비용	18,654	2.2%	2.3%
사무비용 등	71,151	8.6%	8.0%
합계	385,148	46.4%	45.1%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 (2022. 7.29. 기준)

고향납세 모집비용 비율



■ 답례품 조달비용    ■ 답례품 배송비용  
■ 홍보비용            ■ 결제 등비용  
■ 사무비용 등         ■ 제경비 제외한 순세입

11/45

## II. 최근 동향 및 관련현황

### 4. 기부금 모금 증가의 요인

#### 고향납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지원

- 2013년도부터 기부 건수 및 기부 액 규모에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세 시작
- 기부 건수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08년도에는 약 5만여 건에 불과, 2011년도 10만 건을 돌파한데 이어 2013년도 40만여 건, 2014년도에는 190만여 건,
- **고향납세 한도를 2배로 확대**: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액 2,000엔을 뺀 전액이 공제되는 한도액인 「고향납세 한도(ふるさと納税枠)」가, **2015년1월1일 이후 약 2배로 확충**(지방창생과 연계)
-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는 726만 건(전년 대비 3.8배)을 상회하는 등, 제도 시행 8년 만에 무려 135배나 급증한 가파른 성장세
-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2015년4월1일 이후 납부분부터 해당됨)
- 2016년도 지역재생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한 **지방판 종합전략 책정**, 지자체 대상으로 세제 우대조치
- **로컬푸드판매장에서** 고향납세 기부 후 답례품 수령
- 고향납세 **자판기 등장**

12/45

## II. 최근 동향 및 관련현황

### 5. 고향납세(기부금)의 경제적 효과

#### 일본 고향납세의 경제파급효과(2021년도 기준), **28조원!!**

- '21년도('21년4월~'22년3월), 고향납세의 경제파급효과는 **2조8,044억엔**(한화 **약 28조원** 규모)
- '21년도 전 지자체의 고향납세 수입액 **8,302억엔의 3배 이상** 효과
- 주요 내용은, 기부금은 지자체 수요에 맞게 사용처 결정, 답례품 생산과 판매 통한 지역산업과 문화 활성화(일본 전체 답례품수는 40만점 이상, 답례품 제공 사업자 5만 기업 이상)

〈일본 고향납세 경제파급효과〉

구분	샘플비율	금액(백만엔)
고향납세액	100%	830,239
최종수요액	200%	1,660,464
직접효과	181%	1,505,719
1차파급효과	102%	845,274
2차파급효과	55%	453,487
경제파급효과	338%	2,804,480

자료 : 일본 후쿠사토납세종합연구소 홈페이지(<https://fstx-ri.co.jp/news/153>)

13/45

## II. 최근 동향 및 관련현황



〈문베츠시〉

- '21년도 고향납세 최고액 모금 지자체
- 북해도 문베츠시(紋別市): 인구 20,839명
- '21. 고향납세기부금 모금액 152.97억엔 (한화약 1,530억원, 전체예산의 1/2수준)

지역	인구(명)	재정규모(억원)	재정자립도	모금액 (억원)
문베츠시 (북해도)	20,839	약4,037억원(403.7억엔('20년도일반회계 결산기준), 지방세 30.23억엔)	11.27% ('19년 일반회계 기준)	133.92억엔 ('20년결산기준) (약 1,339억원)
강원 00군	21,705	4,567억원('22년예산기준, 지방세 141억원, 세외수입 261억원, 이전수입 3,142억원)	9.54% ('22년 예산기준)	??억원
전북 00군	21,683	4,500억원(지방세 205억원, 세외수입 103억원, 이전 수입 3,549억원)	7.01% (22년 예산기준)	??억원

자료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강원도청 홈페이지 등

## II. 최근 동향 및 관련현황

▶ 「オホーツクの流水と自然を守る寄附金」 応援者のご紹介

「オホーツクの流水と自然を守る寄附金」を私も応援します。



僕は、東京で生まれ育ち、現在も東京で暮らしながら音楽活動で全国を回っています。僕にとって、紋別がかけがえのない街となったのは、平成18年2月、「夏川りみコンサート」のプロデューサーとして紋別を訪れたことがきっかけでした。紋別は自然がとても美しく、食べ物も美味しい。そして何よりも紋別の人達は、とても心温かく、僕を歓迎してくれました。僕は、この紋別の自然とそこに暮らす人達の純粋で誠実な心に強く惹かれ、それ以来、毎年紋別を訪れ、コンサートや養護学校訪問などを行っています。今では紋別は、僕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第二の故郷です。オホーツク紋別がいつまでも美しくあり続けるように、僕も「オホーツクの流水と自然を守る寄附金」を応援します。

ミュージシャン 吉川 悠英

### 오호츠크유빙과 자연을 지키는 기부금원자소개

▶ '오호츠크 유빙과 자연을 지키는 기부금'을 나도 응원합니다

나는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도 도쿄에서 살면서 음악 활동으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나에게 문베츠가 돌도 없는 도시가 된 것은, 2004년 2월 「나츠카와 리미 콘서트」의 프 로듀서로서 문베츠를 방문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문베츠는 자연이 매우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베츠 사람들은 매우 따뜻하게 저를 환영했습니다. 저는 이 문베츠의 자연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순수하고 성실한 마 음에 강하게 매료되어, 그 이후 매년 문베츠를 방문해 콘서트 나 양호학교 방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베츠는 나에게 돌도 없는 제2의 고향입니다. 오호츠크 문베츠가 언제까지나 아름답게 지속되도록, 저도 「오호츠크의 유빙과 자연을 지키 는 기부금」을 응원합니다.

뮤지션 요시카와

자료: <https://mombetsu.jp/zeikin/nouzei/index.html>



### Ⅲ.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향

### Ⅲ.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향

» 고향납세제도의 단점 개선을 통한 조기 안정화 전략

#### 장점(긍정적인 측면)

1. 세금 공제
2. 특전(답례품) 제공
3. 기부처(납세지) 선택 가능(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4. 지역간 세수편차 완화
5. 재정격차 축소
6.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7. 지역자원(특산물) 관심 증대
8. 세수 증대
9. 향토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지역고용 증대)
10. 고향의 중요성 및 애향심 고취
11. 지자체간 경쟁(지방경영시대 특성 발휘)
12. 지자체간 인적교류 증가

#### 단점(부정적인 측면)

1.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지방자치원칙 위배)
2. 답례품 과열 경쟁
3. 기부금의 사용처 구체적으로 알기 곤란
4. 세원의 재로섬 게임, 지역간 갈등 초래
5. 재정 취약지역으로 이전 보장 없어 수평적 형평성 효과 미미(부익부 빈익빈)
6. 세수 예측성 부정확, 세수추계 불안정
7. 현세대 출향민 대상 감정에 호소, 장기적 대안 불가능
8. 득보다 실이 많은 지자체 등장
9. 답례품 관심 높아 고향사랑 왜곡
10. 인기 및 고가 답례품 지자체로 쏠림현상(재정 불균형 문제 야기)
11. 지역내 생산 불가능할 경우 타지역 위탁생산, 수입 역외유출



### Ⅲ.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향

#### » 고향납세제도의 단점 개선을 통한 조기 안정화 전략

##### ☞ 1. 답례품 경쟁의 과열

- 일본에서도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2014년부터 4개년 동안 1,653억엔에서 5,127억엔으로 3배 가까이 급증
- 이 과정에서 과열경쟁 과도한 답례품 비용 지출 => **총무대신 지정제도를 도입**으로 2019년 4,875건으로 감소 후 2020년에 다시 6,725억엔으로 증가 추세(2019년, 답례품도 기부액의 30% 이내로 제한)
- 지정제도의 지정기준:
  - ① 모집의 적정성
  - ② 답례품의 기부금 30%이하
  - ③ 답례품의 지장산품으로 한정

우리는 강력한 법규를 통해 규제

- 일본처럼 특정기간을 두고 재심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답례품 30% 이하 준수여부

### Ⅲ.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향

#### » 고향납세제도의 단점 개선을 통한 조기 안정화 전략

##### 고향납세 대상 지자체 지정에 관한 관계조문(개정후의 지방세법)

(기부금세액공제)

- 지방세법제37조의 2
2. 전항의 특례 공제 대상 기부금이란, 동항 제1호의 기부금(이하 이 조에 있어서 「제1호 기부금」이라고 한다.)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 등에 의한 제1호 기부금 모집의 적정한 실시에 관한 기준으로서 총무대신이 정하는 기준(도도부현 등이 답례품 등(도도부현 등이 제1호기부금의 수령에 따른 해당 제1호 기부금을 지출한 자에 대해서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그 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총무 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동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및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도도부현 등으로서 총무 대신이 지정할 것을 말한다.
- ① 도도부현 등이 개별의 제1호 기부금 수령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 등의 조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무 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 모두 해당 도도부현 등이 수령한 해당 제1호 기부금의 액수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 ② 도도부현 등이 제공하는 답례품 등이 해당 도도부현 등의 구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총무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하 이 조에 있어서 「지정」이라고 한다.)을 받고자 하는 도도부현 등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기부금 모집의 적정한 실시에 관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동항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지자체에 대한 기준

기준① : 고향납세 모집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 답례품을 송부하는 지자체에 대한 추가 기준

기준② :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할 이하로 할 것

기준③ : 답례품은 자연생산물(지역 생산품)으로 할 것

### Ⅲ.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향

» 고향납세제도의 단점 개선을 통한 조기 안정화 전략

☑ 2. 답례품 사용처 불명확

- Ex.) 일본, 사용처(분야) 지정 가능(약 97.7%)
  -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공개
  - 사업별 기부자 공개(공개 동의자 한함)
  - 북해도 몬베츠시의 기부자공개 사례

高市 剛 様		新田 俊司 様	
高市 英妃 様		WANG WEIYI 様	
高内 泰司 様		WANG ZHENG 様	
高江洲 未子 様		WANG SHU 様	
高江洲 知弥 様		王 淑文 様	
高尾 淳 様	10,000	王 彦通 様	10,000
高尾 圭輔 様		ウシツアイン 様	
高尾 研司朗 様		王 品方 様	
高尾 千春 様		WANG PO WEI 様	10,000
高尾 知幸 様		王 美琢 様	
高尾 奈々 様		王 凌涛 様	
高尾 野 様		ワンライオン エンタート 様	
高尾 博司 様		Ng YingJian 様	
高尾 実 様	11,000	徐洋 眞善人 様	
高尾 行雄 様		Yeh ChunLiang 様	
高尾 正寛 様	22,000	Bringer Todd 様	
高尾 雅美 様		CHEN CHIENHUNG 様	
高尾 幹 様		SHIE CHUENKAI 様	
高尾 結美 様		Tan Avenia 様	34,000
高尾 良太 様		Cuandra Andre 様	10,000

신뢰 구축 가장 중요

- 기부자가 자유롭게 기부사용처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공개 여부는 기부자 의사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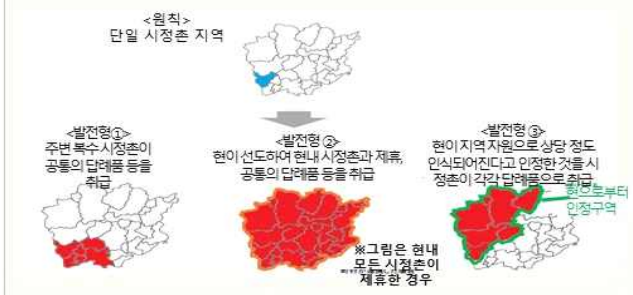
20/45

### Ⅲ.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향

» 고향납세제도의 단점 개선을 통한 조기 안정화 전략

☑ 3. 세원 제로섬과 지역갈등

- Ex.) 일본은 지방세 중심(지방간), 우리나라는 국세중심의 세액 공제(중앙=>지방)
  - 우리나라는 재정분권 효과 기대
  - 답례품 제한을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 생산품으로 확대



지역간 연계/협력

- 답례품은 주변 지역과 연계협력하여 생산한 답례품까지 인정(단, 관련 답례품은 양 지자체 사전 협약에 의한 물품에 한정)하여 갈등 일정 부분 해소

21/45

### Ⅲ.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향

» 고향납세제도의 단점 개선을 통한 조기 안정화 전략

#### 4. 장기적 대안 한계, 제도 왜곡

- '고향사랑기부금제' 일 경우 출항민이 우선이 될 가능성 높으나, 고향을 '지역'으로 인식 전환 시, 일본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답례품이 우선될 수 있는 리스크 있으나, 답례품을 통해 대상 지자체에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 필요



관심/방문

- 주소지에서의 소비 => 기부처 관심과 방문 가능한 답례품 발굴

### Ⅲ. 고향사랑기부 추진 방향

#### 답례품 발굴 사례

楽天トラベル クーポン返礼品

클라우드 펀딩

체험형 답례품

오리지널 답례품

과일

注目のお礼の品

【予約】香りも良く、あっさりとしたソフトな甘さ! 秋田のアシアンはらみつ600g

秋田県由利本荘市

【訳あり・数量限定】函館 やきとりセット (タレ付き・冷凍缶) 計66缶 約1,900g

鹿児島県姶良市

味と香りの競演をお楽しみください! 甲府市で醸造された個性豊かな4種のワインセット

山梨県甲府市

レビニー系巨匠! 北海道限定よつ葉チーズとバター詰の合わせセット8種

北海道士幌町

### Ⅲ.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향

» 고향납세제도의 단점 개선을 통한 조기 안정화 전략

☞ 5. 득보다 실이 많은 지자체 등장

- Ex.) 일본에서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 대한 기부가 많아, 주소지 지자체는 세액공제로 인해 기부금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많은 부의 효과 발생  
=> 지방교부세를 통해 감액분 보전(단, 감액분의 75%만)

- \* 일본의 경우 지방세에서의 세액공제분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간 재정 형평화 기능을 기대
- \*\* 지자체별 세액공제로 주민세 감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1. 요코하마시, 230억900만엔, 2. 나고야시, 143억 1500만엔,  
3. 오사카시, 123억5900만엔 등의 순위



- 현재, 우리나라는 감액분에 대한 보전 검토 없음
- 향후 발생 가능성 있어 일부 지자체 불만 예상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 지역자원과 답례품

● 지역자원 vs. 지역브랜딩

- 지역자원(Local Resources) : 지역에 고정되어 있고 지역개발에 이용 가능한 자원
  - 광의의 지역자원 : 자연자원, 문화적 자원, 인공시설 자원, 인적 자원 등을 포함
  - 협의의 지역자원 : 자연자원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연구	용어	개념 및 특징	유형분류
Kretzman & McKnight (1996)	Local Assets	-ABCD (Area-Based Community Development)를 위한 커뮤니티 자산 -공동체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산	핵심 건축블록(개별자산, 조직화된 자산) 2차 건축블록(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목적) 지역의 인적, 물적 자산 잠재 건축블록(공공복지 비용, 공공자산증대 비용, 정보제공 및 교육)
이왕건 외 (2011)	지역자산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특정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유형의 자산	자연적 자산(장소적, 환경적 자산), 무구조적 자산(공간적 자산, 시설적 자산), 문화적 자산(역사적 자산, 관광적 자산, 사회적 자산(인적 자산, 이미지 자산), 경제적 자산(기업체 자산, 노동력 자산)

연구	용어	개념 및 특징	유형분류
北海道市 村振興協會 (2008)	지역자원	-지역활성화의 출발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자원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협동을 추진하는 것 -인적, 문화, 정보자원	고정자산(지역특성 자원, 자연자원, 역사적 자원, 문화·사회자원, 인공시설 자원, 인적 자원, 정보자원) 유동자원(자금, 특산품, 자연, 중간생산물)
이선영·남진 현(2015)	지역자산	-지역주체(주민·주요단체·지역기업)의 역량 -지역의 기인·기초·발전 가능한 잠재적 자산	물리적 자산, 환경적 자산, 역사·문화적 자산, 인적 자산, 사회적 자산
이연숙·박재 현(2014)	지역자산	-지역이 가진 기존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	Hardware, Software, Humanware
박민권 (2012)	지역자산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 -지역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역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형자산(자연적 자산, 건조 환경 자산, 문화·관광 자산, 기업자산) 무형자산(문화·관광 자산, 사회적 자원, 이미지, 역사·문화 자산, 관광 자산, 기업 자산)
장주연 외 (2015)	지역자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자연적 자원, 구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
내오드 미사 연구소(2013)	지역자산	-자연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자연적 자원, 구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
한경수 (1999)	지역자산	-인간이 물질적·정신적 욕망을 만족하고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자연적 자원, 구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

자료 : 서수정외(2019:10~11)에서 재인용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 지역자원과 답례품

● 지역자원 vs. 지역브랜딩

- 지역자원의 범주와 구성요성 ; 물적자원과 비물적 자원

구분	특성	구성요소
물적 자원	공간자원	지역의 공간구조적 특성
	시설자원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특성
	산업자원	산업·경제적 활용가능성 및 잠재력을 가진 자원
	역사자원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자원
비물적 자원	관광자원	관광동기나 관광수입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자원
	인적자원	지역주체들의 사회활동 및 기여도 (잠재력)
	경제자원	지역 내 기업활동 기반 및 지역주체들의 경제활동
문화자원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자원	

자료 : 서수정외(2019:13)에서 재인용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 지역자원과 답례품 발굴

#### ● 지역자원 vs. 지역브랜딩

- 시기별 구분에 따라서는 항시성, 계절성 자원으로도 구분 가능할 것임

- 항시성 : 1년 12개월 늘 존재하거나, 특히 1,2,3차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제공 가능한 형태의 자원들
- 계절성 : 일정 기간에만 존재, 즉 계절적 제한을 받으려,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하여 항시성을 가지도록 할 필요성이 높은 자원들(제주도의 경우 계절성 답례품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짐)



28/45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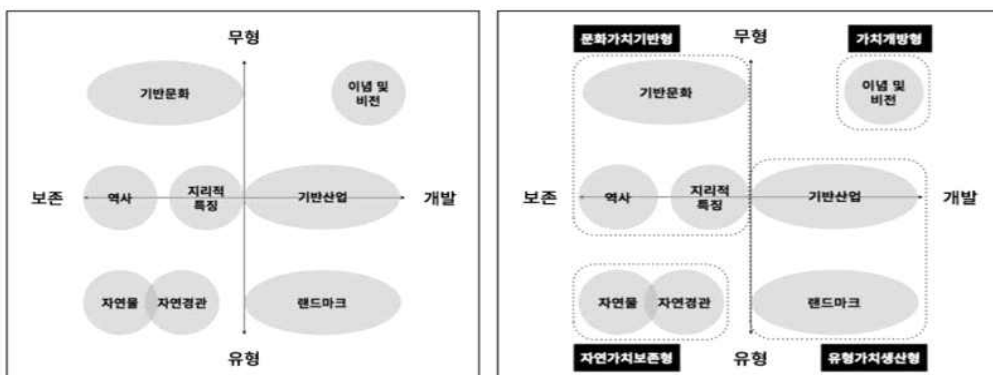
### >> 지역자원과 답례품

#### ● 지역자원 vs. 지역브랜딩

- 지역브랜딩(Local Branding) : 어떤 지역 그 자체 또는 지역의 대표 자산을 사람들에게 브랜드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정의. 브랜드화하는 지역 성격 또는 범위에 따라 장소브랜딩, 도시브랜드 등으로 대체(김수은, 2019:147)

※ 브랜드(Brand)란, 다른 상품이나 기업으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한 브랜드 네임, 로고, 슬로건, 포장 등

※ 브랜딩(Branding)란,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



자료 : 김수은(2019:163)에서 재인용

29/45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 지역자원과 답례품

#### ● 지역자원으로서 문화관광상품의 활용

- 문화관광상품 : 한 구성원들이 과거부터 생활해 오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예술 및 가치관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이용한 문화 상품과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에 의해 형성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나누어 설명(황균정, 2020:74)

※ 문화상품: 한 구성원들의 생활 속 가치관, 철학, 그리고 세계관 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문화와 그 구성원들이 생활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활 방식이나 행위들에 의해 표출되는 유형 문화

※ 관광상품: 일정한 지역이나 타국에 머물다가 원래 사는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관광객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현상과 그 현상과 관련된 경제적 모든 행위와 관련된 상품

※ 문화관광상품: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업활동(상품에 문화적 요소를 첨부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해 기능성을 높이고 미적 감각을 이용한 예술성을 높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것

\* 문화관광부의 문화상품 개념: 문화상품, 관광상품, 특산품(토산품), 공예품

문화관광상품의 유형과 특징

	Characteristics	Feature
문화상품	문화유산, 전통, 민속, 예술, 공예, 디자인, 생활양식, 가치관, 철학, 세계관, 의식주, 생활방식, 행위 등에 의해 표출되는 유형 문화	문화유산, 전통, 민속, 예술, 공예, 디자인, 생활양식, 가치관, 철학, 세계관, 의식주, 생활방식, 행위 등에 의해 표출되는 유형 문화
관광상품	일정한 지역이나 타국에 머물다가 원래 사는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관광객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현상과 그 현상과 관련된 경제적 모든 행위와 관련된 상품	일정한 지역이나 타국에 머물다가 원래 사는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관광객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현상과 그 현상과 관련된 경제적 모든 행위와 관련된 상품
문화관광상품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업활동(상품에 문화적 요소를 첨부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해 기능성을 높이고 미적 감각을 이용한 예술성을 높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것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업활동(상품에 문화적 요소를 첨부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해 기능성을 높이고 미적 감각을 이용한 예술성을 높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것

자료 : 황균정(2020:75)에서 재인용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 지역자원과 답례품

#### ● 답례품의 유형구분

- 일반적인 구분

• 육류, 쌀, 빵, 과일류, 새우 및 계류, 어패류, 야채류, 달걀(계란, 오골계 등), 주종, 음료류, 제과류, 가공품 등, 면류, 조미료 및 유제품, 찌개류, 여행, 이벤트와 티켓 등, 스포츠·아웃도어, 잡화·일용품, 미용관련, 패션관련, 가구·공예·장식품, 감사장 등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 지역자원과 답례품

- 제주도의 사례 : 온라인몰 활용

서귀포인정		경제동상진흥원 이제주물		관광협회 탐나오		제주마점	
				선박	12		
서귀포감귤	24			관광지/레저	633		
체험&관광	39			농산물	96	농산물	44
농산물	47	농산물	79	수산물	931	수산물	26
수산물	30	수산물	64	축산물	98	축산물	10
축산물	46	축산물	66	가공식품	154	가공식품	97
가공식품	49	가공식품	270	화장품/미용	76		
		화장품	43	기념품	162		
		공예품	19	맛집	92		
		생활용품	5	여행사상품	2476		
				총합계	4,720	총합계	177
총합계	235	총합계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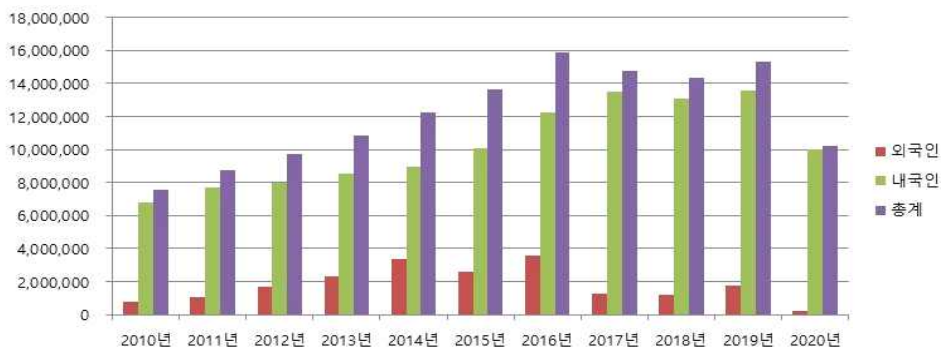
자료 : 주원정(2022), 고향사랑기부금시도연구원연합토론회 자료 인용하여 재작성

32/45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 지역자원과 답례품: 제주 관광상품 발굴과 활용전략

- 관광상품을 활용한 답례품 발굴의 가능성
  - 2019년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1,356만에서 2020년 1,000만명으로 감소(외국인 관광객, 코로나여파로 급감)
  - 코로나 상황 완화, 국내외 관광객 인구 증가 추세, 제주도 방문객 증가 예상



자료 : 주원정(2022), 고향사랑기부금시도연구원연합토론회 자료에서 재인용

33/45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 지역자원과 답례품: 제주 관광상품 발굴과 활용전략

- 관광두레 활용('22년3월기준, 65개지역 240여개 주민사업체 참여중, 경인9, 강원4, 대경11, 세종충북5, 대전충남9, 전북5, 광주전남9, 경남7)
- 사업아이템 비율: 체험(37.7%), 식음(29.5%), 기념품(15.4%), 주민여행사(11.1%), 숙박(3.6%), 기타(2.6%)



자료 : 황건택(2022), 제5차 고향사랑기부금 정책연구회 자료에서 재인용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 지역자원과 답례품: 관광상품 발굴과 활용전략

- 관광벤처와 신기술 활용한 체험형 답례품 발굴 : 가상증강현실 등 적극 활용

#### ○ 관광벤처 발굴 수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추경)	'20	'21	합계
관광벤처 발굴수	10	80	80	80	73	67	57	72	89	98	119	140	965

#### ○ 일자리 창출 및 매출액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일자리 창출 (명)	169	150	182	255	323	327	360	385	497	501	3,149
매출액 (억원)	-	-	21.1	98.0	146.6	358.1	697.7	1,048	1,024.4	908.7	4,302.6

자료 : 황건택(2022), 제5차 고향사랑기부금 정책연구회 자료에서 재인용

## IV. 답례품 발굴과 대응

### >> 지역자원과 답례품: 관광상품 발굴과 활용전략

● 관광벤처 유형

<p><b>① 플랫폼형</b></p>  <p><b>네이처모빌리티</b>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p>	<p><b>② 시설기반형</b></p>  <p><b>모노리스 제주파크</b> (‘9.81 PARK’ ICT 기술 기반 레이싱 어트랙션 파크)</p>	<p><b>③ 체험형</b></p>  <p><b>해녀의 부엌</b> (해녀문화 주제 미디어아트 공연, 다이닝)</p>
--	---	--

자료 : 황건혁(2022), 제5차 고향사랑기부금 정책연구회 자료에서 재인용

## V. 제주도의 대응책

## V. 제주도의 대응책

### >>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도입 전 대응책

- **답례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 최소의 답례품 경비 지출**
  - 지역 생산품 중 고가의 품목이 아니더라도 기부자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발굴이 중요할 것임
    - ※ 일본의 고향납세 관련 경비 중, 답례품 경비가 가장 큰 비중(총비용의 85% 이상, 조달 및 배송)을 차지하고, 고향납세제도의 있어서 약과 독을 동시에 제공
  - 육지와 같이 쉽게 접근이 어려워 자주 방문이 어려우나 1회 방문 시 최소 1박2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체류하면서 체험 및 방문하는 관광상품 및 패키지(상품 및 상품권 연계) 답례품 개발이 중요할 것임
  - 특히, 소액기부자에 대한 답례품(3만원~10만원 상당)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 관광상품과 연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포인트제 활용, 10만원 이상의 답례품(관광패키지: 숙박+입장료 및 체험료+지역사랑상품권+ 추억의 꾸러미세트 등)의 발굴 검토 필요
- **유인책 발굴 노력 필요**
  - 신뢰가 담보(전제)되며, 지역을 대표하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 발굴 중요(방문형, 체험형, 체류형 답례품)
    - ※ 제주도는 접근성이 가장 난제로, 항공사와 연계한 항공권 포함한 패키지 개발도 (문화관광시설 입장권, 농업관련 체험 이용권, 테마파크 시설 이용권 등의 답례품 제공 가능)
- **제주도 지역 현실에 적합한 조례제정 필요**
  - 참조 조례(안) 참조하여 제주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에 적절한 조례 제정을 위해 고민 필요
  - 주요 내용: 목적,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 및 운용, 부칙 등

38/45

## V. 제주도의 대응책

### >>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도입 전 대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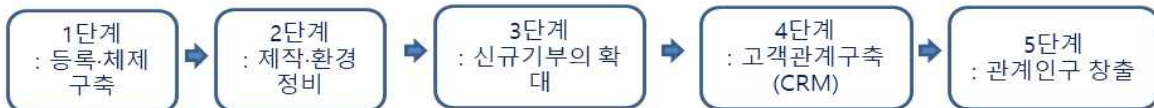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공모절차 등 조례로 규정**
  - 답례품 제공은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규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의 절차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 조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지역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답례품에는 지역민들의 감사한 마음 즉, “따듯함” 과 “정성” 이 담겨있어야 함
  - 따라서, 답례품 선정에 있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더라도 사전에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지역발전 및 지역내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기부금 모집 전략 필요**
  - 지역 특산품 제공에 그치지 말고 지역발전 정책(인구감소지역 정책, 지방소멸대책, 도시재생 등)과 연계, 지속 가능형 사업들로 발전
  - 일본의 고향납세의 사용처로는 주로 건강· 의료· 복지, 교육· 인재육성, 환경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사업처 발굴에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39/45

## V. 제주도의 대응책

### »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도입 전 대응책

- 홍보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
  - 기존 관련 온라인 물 활용(종합포털 이외에, 서귀포in정, 경제통상진흥원 이제주물, 관광협회 탐나오, 제주마쌈)
  - 기부금 모금이 목적이 아닌, 기부금 모금은 방법론에 불과, 이러한 행위를 통해 관계인구 창출, 지자체 인지도 증가 등 지역 과제와 연계한 의식 전환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홍보 게시물 제작이 필요
  - 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의 경주(모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계에서 사용처까지 고려한 모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각 타겟별 전략
  - 신규 기부자 개척: 초기 제주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계기마련과 답례품의 매력이 중요 => 홍보비 필요
  - 재기부자(repeat donator): 제주도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며, 신규 기부자보다 관심이 있어 홍보비 적게 필요
  - 단계별 접근



## V. 제주도의 대응책

### » 일본의 몇가지 사례

- 사례1) 킷 미트(미야자치현 미야코노쥬(宮崎県都城市), '21년도 제2위(약 146억엔))
  - 우수 식재료를 공급, 줌으로 연결, 셰프가 알려주는 미야자키소고기 레미피, 식당 주인이 소개하는 미야코노쥬의 매력



자료 : <https://www.commercepick.com/archives/22386>

## V. 제주도의 대응책

### >> 일본의 몇가지 사례

- 사례2) 고향납세 답례품 아이디어콘테스트(효고현카사이시(兵庫県加西市), '21년도 64억엔)
  -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 그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답례품 아이디어콘테스트 실시. 응모된 아이디어를 관내 협력 사업자에게 제공 및 협의, 단순 매력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답례품으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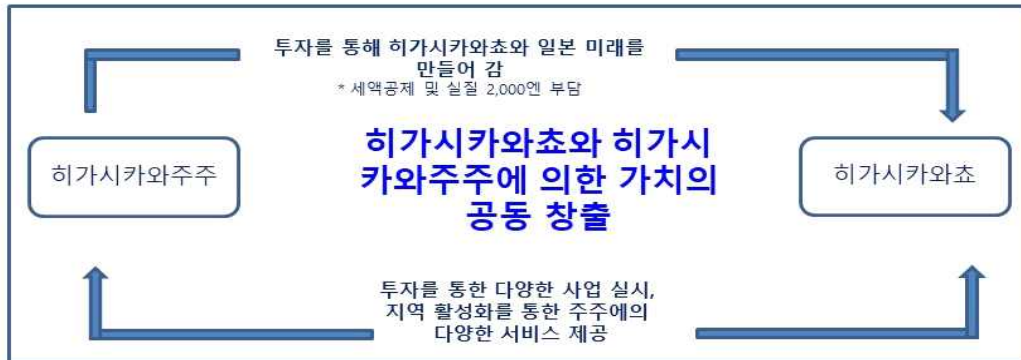
자료 : <https://www.commercepick.com/archives/22386>

42/45

## V. 제주도의 대응책

### >> 일본의 몇가지 사례

- 사례3) <사진의 마을> 히가시카와 주주(株主)제도(홋카이도히가시카와쵸(北海道東川町), '21년도 9.5억엔)
  - 히가시카와쵸를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역에 투자(기부)함으로써 <주주>가 되며, 마을만들기에 참가하는 제도
  - 이 투자는 자치단체에의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향납세제도로서 주민세 등 세법상 공제도 받으면서, '특별주민'의 인정과 '주주증' 발행, 그 외에도 숙박우대 등도 받을 수 있음



자료 : <https://www.commercepick.com/archives/22386>

43/45

## 참고자료


- 김수은(2010), 지역브랜딩을 위한 지역 자원 유형화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회연구,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17(2):145-155.
- 서수정·장민영·김영하(2019),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기본연구보고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주현정(2022),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 및 과제, 고향사랑기부금 시도연구원 연합토론회 발표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건혁(2022), 고향사랑기부금 담례품에 있어 지역 관광상품의 활용 가능성과 방안, 제5차 고향사랑기부금제 정책연구회 발표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균정(2022), 지역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기념품 개발연구-기념품 디자인 개발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11):73-79
-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2021年度版の振り返りと自治体様好事例まとめ | EC・ネット通販を中心とした物販ビジネス専門メディア「コマースピック」(commercepick.com)  
<https://www.commercepick.com/archives/22386>

44/49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 및 과제**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주 현 정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 및 과제

주 현 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2022. 10. 17.



## 목 차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
2. 예상 세입 추정
3. 대응방안
4. 추후 논의사항

#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

## 제주 여건

- 제주는 전국 1% 인구, 낮은 출향민 →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액 낮을 가능성
  - 국내 인구 5,162만 명, 제주 인구 67만 명 (외국인 2.3만명 포함 시 69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22년 5월 기준)
- 지역별 답례품 경쟁 과열
- 제주는 매력적인 자원이 많고,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여 경쟁력 있을 것

## 제주의 필요성

- 향후 답례품 제공 활발해지면 제주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 제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

## 지역별 연구 현황

강원연구원	▪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육동한, 박상현, 엄명배, 전지성, 2017.10.)
광주전남연구원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D-300, 주요 쟁점과 지자체의 대응방안(2022.03.02.)
경기연구원	▪ 자치분권시대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안 연구(이현우 외, 2020.11.)
경남연구원	▪ (주간 브리핑)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과 경남의 대응방안(2018.05.14.)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눈앞,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2020.10.27.)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실시까지 앞으로 1년, 이렇게 준비하자!(2022.01.03.)
대구경북연구원	▪ (대경 미니세미나)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신두섭 발표, 2021.11.25.)
대전세종연구원	▪ 고향사랑기부금제(고향세) 도입과 대전광역시 대응방안(유병선, 이창립, 2020.10.14.) ▪ 일본 후쿠사토세 제도 소개, 국회 입법동향, 제도도입이 대전광역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응방향 제시
전북연구원	▪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김동영 외, 2016)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김동영, 2022.04.01.)
제주연구원	▪ (정책이슈브리프) <u>제주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연구(2022.01.27.)</u> ▪ (원안과제) <u>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2022. 6. 30.)</u>
충남연구원	▪ 지역특성을 살린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용모델 개발(신승근, 2018) ▪ 고향사랑기부제 국외사례 연구(유학열, 2021.12.31.) ▪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진행중인 전략과제, 03.01.~10.3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보고서)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홍근석, 2019) ▪ (기고논문)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홍근석, 엄명배, 신두섭) ▪ (기고논문)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주만수)

출처: 각 연구원 홈페이지

##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

###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자료 참조)

- 도 홈페이지(메뉴신설) 및 도공식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홍보:22.1.18. ~
- 고향사랑기부금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22.2.19.
- 제주사랑기부제 도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제주연구원) :‘22.2월 ~ 6월
-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2.5.6. ~‘22.6.15.(40일)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실무 TF 구성\*·운영 :‘22. 5. 23.

\* 12개 부서(도 10, 행정시 2), 전문가(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연구원, 6차산업지원센터) 등 21명

4

##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

### • 향후 추진계획

- (홍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사항 온·오프라인 홍보 :‘22. 연중  
※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활용 / 주요공항만, 관광지 등 도외인을 대상으로 홍보
- (예산확보) 홍보, 답례품 준비, 시스템구축비 등 예산 제1차 추경 요청
- (전담인력 확보) ‘22년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확보 :‘22. 8월
- (조례제정)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 추진 : ~‘22. 11월
- (답례품 준비) 답례품(농·수·축, 관광 등 지역특산물) 및 공급업체 선정: ~‘22. 12월
- (시스템) 기부금 모집 및 답례품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 등 :~‘22. 12월

5

## 2. 예상 세입 추정



- 예상기부금=잠재 기부자 수(인) \* 잠재 기부금액(원)
- 잠재 기부자 수- 명예도민, 재외도민, 전출인구, 관광객 등

6

## 2. 예상 세입 추정

### 잠재 기부자

- 1) 명예도민
  - 1969년 「제주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목적: 제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
  - 명예도민 예우시책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예도민 안내센터를 설치함
    -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7

## 2. 예상 세입 추정

### 잠재 기부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명예제주도민은 2,021명임
- 제주도는 명예도민에게 제주의 근황에 대한 홍보 및 제주의 가치를 정기적으로 알리면서 명예도민이 제주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내 거주하는 명예도민 수는 1,891명

〈명예도민 수여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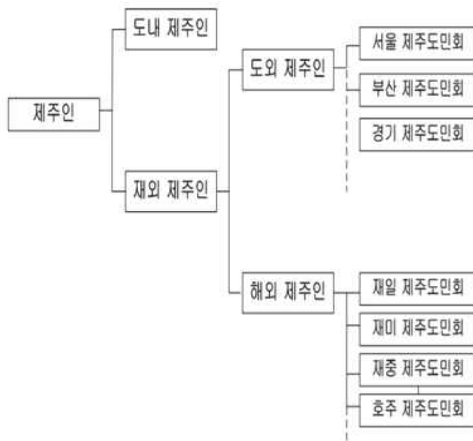
계			국내인			해외동포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21	1,872	149	1,891	1,761	130	24	19	5	106	92	1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2. 예상 세입 추정

### 잠재 기부자

- 2) 재외도민(재외제주도민, 출향인사)
  - 제주인=도내 제주인 + 재외 제주인



출처: 민기·고광명(2014).

「제주인의 역량 극대화 재외(在外)제주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

## 2. 예상 세입 추정

### 잠재 기부자

〈제주특별자치도 재외제주도민회 현황(2020.12.31)〉

구분	도민회명	창립년도	도민수(명)	집단거주지
국내 (525,510명)	서울제주도민회	1955	250,000	서울-수도권
	부산제주도민회	1946	220,000	부산광역시
	대구제주도민회	1970	4,000	대구광역시
	인천제주도민회	1946	6,000	인천광역시
	대전제주도민회	1940	4,000	대전광역시
	울산제주도민회	1995	30,000	울산광역시
	경남제주도민회	1981	1,600	마산- 창원- 진해
	서부경남제주도민회	1989	5,000	통영-사천-거제-진주
	충청제주도민회	1966	90	충천시
	안산제주도민회	1961	2,000	안산-시흥
	군포제주도민회	2003	1,000	군포시
	수원제주도민회	2001	1,300	수원시
	안양제주도민회	2008	250	안양시
	광주제주도민회	2011	150	광주광역시
	부천제주도민회	2006	60	부천시
	평택제주도민회	1995	60	평택시
국외(미국)	재미제주도민회(NY)	1978	500	뉴욕-뉴저지
	재미남가주제주향토회	1988	600	LA
	재미시카고제주도민회	1987	300	시카고
	재미워싱턴DC제주도민회	1991	400	워싱턴
	재미(아)플리타제주도민회	1992	100	아플리타
국외(일본)	재일본제주도민회	1961	40,000	동경지역
국외(일본)	관서제주도민회	1994	80,000	대판지역
	센다이제주회	1975	250	센다이시
국외(중국)	상해제주도민회	2006	70	상하이
국외(호주)	시드니제주도민회	2007	30	시드니
국외(남미)	파라과이-브라질-아르헨티나	2008	200	-
소계			525,510	-

- 2020년 국내 거주  
도외제주인 52만5천명,  
제주 인구의 78.5%  
(서울25만, 부산22만)
- 제주특별자치도민회  
16개 단체, 취업, 학업,  
사업 등의 목적으로 출향

10

## 2. 예상 세입 추정

### 잠재 기부자

- 재외도민증 발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재외도민의 은혜에 보답하고 예우를 통하여 자부심, 자긍심 고취 위하여 전국 최초 '재외도민증' 발급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지원조례」제8조(2010년 제정)
  -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있으며 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재외도민증 발급현황〉

11



## 2. 예상 세입 추정

### 잠재 기부자

#### 3) 전출인구

- 만19세 이상~65세 미만, 426,734명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연령별 이동자 수 (2001~2021년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286	279	281	228	223	209	227	190	193	214	227	212	189	168	159	159	199	220	189	198	145	28
19세 이하	214	199	229	252	277	286	251	244	219	229	236	224	209	209	225	224	269	329	224	230	193	21
20~24세	267	311	331	278	294	281	251	244	243	219	199	215	180	237	221	195	205	224	213	236	228	24
25~29세	341	409	429	346	381	366	337	321	320	216	219	205	190	236	224	224	287	258	237	300	192	23
30~34세	381	544	534	346	392	376	345	334	342	178	198	187	176	231	218	236	238	243	219	257	258	24
35~39세	318	319	314	268	264	269	269	270	272	182	184	185	190	222	225	241	229	264	264	248	236	26
40~44세	367	554	516	368	322	314	310	340	341	216	196	183	202	223	209	259	274	317	297	240	306	28
45~49세	302	240	244	203	204	199	202	240	193	181	181	151	171	190	246	236	223	253	238	197	248	27
50~54세	289	281	292	200	176	171	286	234	219	188	187	190	184	181	186	227	222	220	213	233	281	28
55~59세	244	272	234	200	175	181	269	227	223	182	193	182	148	153	162	175	196	202	242	248	202	28
60~64세	210	241	224	202	247	209	277	237	199	196	172	183	148	181	172	171	206	239	241	224	248	31
65세 이상	146	189	189	181	146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29
19~24세	188	188	218	202	218	204	208	201	247	201	221	188	188	228	171	209	188	211	208	205	285	52
25~29세	142	189	217	215	228	228	288	281	287	262	219	198	182	187	179	189	146	194	184	134	178	34
30~34세	122	141	220	181	188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23
35~39세	112	113	107	140	140	137	187	174	189	188	136	183	141	136	142	152	159	148	149	152	175	36
40~44세	122	207	134	126	118	122	121	148	141	153	160	122	122	142	121	142	139	148	149	152	128	33
45~49세	271	257	303	290	241	231	271	251	285	373	390	304	379	415	362	373	403	406	409	399	378	36
50~54세	248	429	388	328	284	300	319	384	305	324	344	300	354	401	440	440	436	442	436	442	401	40
55~59세	261	314	407	387	348	328	340	380	342	295	219	381	381	327	323	371	410	411	402	328	413	40
60~64세	476	899	817	817	480	500	429	429	389	382	381	464	492	521	591	523	633	642	633	661	648	41
65세 이상	678	828	734	733	712	812	872	824	819	454	595	600	689	817	753	783	933	790	804	818	828	42
20~24세	861	926	923	576	534	632	626	741	641	621	647	603	689	903	903	903	903	903	903	903	903	44
25~29세	817	926	923	576	534	632	626	741	641	621	647	603	689	903	903	903	903	903	903	903	903	44
30~34세	1023	824	1016	684	684	807	1052	864	782	715	633	618	653	828	701	723	825	656	1078	1036	1091	48
35~39세	848	800	8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48
40~44세	832	820	820	718	688	749	797	788	728	722	638	619	638	619	638	619	638	619	638	619	638	48
45~49세	748	722	722	600	577	611	641	641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48
50~54세	706	699	678	638	617	661	660	672	639	602	591	587	638	474	552	489	517	603	547	614	632	62
55~59세	623	623	623	521	49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62
60~64세	427	464	445	345	349	408	418	418	418	418	418	418	418	418	418	418	418	418	418	418	418	62
65세 이상	424	424	424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62
20~24세	411	429	407	320	281	414	372	317	442	386	372	334	319	429	429	429	429	429	429	429	429	62
25~29세	411	388	408	318	287	310	407	401	440	411	371	303	306	396	408	408	408	408	408	408	408	62
30~34세	374	341	313	300	327	388	426	406	419	411	440	409	412	401	420	420	420	420	420	420	420	62
35~39세	308	324	327	300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62
40~44세	315	309	337	308	302	301	420	375	375	399	382	389	382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62
45~49세	281	287	340	337	344	362	315	333	362	359	337	311	311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62
50~54세	228	228	211	208	216	246	214	246	214	246	214	246	214	246	214	246	214	246	214	246	214	62
55~59세	188	229	230	208	189	187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62
60~64세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62
65세 이상	188	188	212	208	223	209	200	214	201	279	215	208	208	217	244	423	426	423	423	423	423	62
19~24세	123	147	219	227	271	274	292	319	288	284	288	247	270	287	287	286	324	418	486	484	510	68
25~29세	127	129	158	172	216	227	277	281	289	312	244	257	249	289	311	321	382	463	518	563	529	68
30~34세	95	87	146	145	256	271	326	350	323	284	252	217	240	238	288	317	373	437	456	513	546	71
35~39세	102	105	125	131	178	202	291	318	354	330	291	276	252	279	384	346	339	389	404	428	481	71
40~44세	84	78	84	80	107	132	118	106	122	143	138	146	176	180	170	241	241	241	241	241	241	71
45~49세	78	88	104	121	118	11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71
50~54세	104	90	109	106	113	113	189	182	191	249	229	214	236	230	272	356	320	393	407	411	399	73
55~59세	84	102	100	115	108	114	141	176	209	199	216	221	246	223	320	307	324	380	374	441	388	74
60~64세	78	88	104	121	118	11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71
65세 이상	90	78	82	103	124	109	109	126	125	163	161	160	186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74
19~24세	87	71	86	111	115	112	127	127	144	131	132	148	176	208	238	288	348	347	421	421	421	77
25~29세	102	105	125	131	178	202	291	318	354	330	291	276	252	279	384	346	339	389	404	428	481	77
30~34세	84	78	84	80	107	132	118	106	122	143	13											

## 2. 예상 세입 추정

### 시나리오 분석

- 1) 제주가 고향-제주에 고향이면서 제주에 기부하겠다는 비율 31.2%
  -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홍근석, 엄명배, 신두섭, 2019 외)
  - (a)재외도민증 누적 발급 수 97,655(2021년 기준)명 \*31.2%=30,468명
  - (b) 도외 누적 전출인구 (만19세-65세 미만) 426,734명\*31.2%=133,141명
  - (c) 국내 재외도민 525,510\*31.2%=163,959명
- 2) 제주에 고향 아님- 국내 거주 명예도민
  - (d)1,891명\* 5.1%\*(26/31)=80.886명
- 명예도민은 제주 출신이 아니므로, 예상 기부자 시나리오에서는 제주 출신인 a), b), c)에 d)명예도민을 각각 합할 것임
  - 시나리오1=재외도민증 발급 수+명예도민= 30,549명
  - 시나리오2=도외 전출인구+명예도민= 133,222명
  - 시나리오3=재외도민+명예도민= 164,040명

14

## 2. 예상 세입 추정

- ▶ 잠재 기부금액 10,000원 ~ 5,000,000원
- ▶ 손익분기 기부금 추정 (기부금 d)
  - $d = 0.3d + [100,000 + (d - 100,000) * 0.165]$
  - $0.3d = d - [100,000 + (d - 100,000) * 0.165]$
  - $d = 156,074$ 원

15

## 2. 예상 세입 추정

### 시나리오별 분석

- 분석결과, 기부자가 1만원씩 기부할 경우 예상 기부금은 최소 3억에서 최대 16억원으로 예상됨.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시나리오1에서는 30억, 시나리오2에서는 133억, 시나리오3에서는 164억 원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됨

〈시나리오별 예상 기부액〉

기부금액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10	305,490	1,332,220	1,640,400
30	916,470	3,996,660	4,921,200
50	1,527,450	6,661,100	8,202,000
100	3,054,900	13,322,200	16,404,000
156	4,765,644	20,782,632	25,590,240
200	6,109,800	26,644,400	32,808,000
300	9,164,700	39,966,600	49,212,000
500	15,274,500	66,611,000	82,020,000
1,000	30,549,000	133,222,000	164,040,000
2,000	61,098,000	266,444,000	328,080,000
3,000	91,647,000	399,666,000	492,120,000
4,000	122,196,000	532,888,000	656,160,000
5,000	152,745,000	666,110,000	820,200,000

(단위: 천원)

## 2. 예상 세입 추정

###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앞의 분석에서 사용한 기부 비율 31.2%(제주 출신), 4.28%(비제주 출신)를 ±10~20% 조정하여 계상함
- 제주가 고향-제주가 고향이면서 제주에 기부하겠다는 비율 31.2%  
31.2% → -10%(28.08%), +10%(34.32%), -20%(24.96%), +20%(37.44)

〈기부비율 조정 후 변동된 기부 대상 수〉

민감도	재외도민증	전출인구	재외도민	명예도민
20%	36,523	159,599	196,541	96
10%	33,496	146,370	180,250	89
-10%	27,441	119,912	147,668	73
-20%	24,414	106,684	131,378	65

〈기부 비율 변동으로 인한 시나리오별 기부 대상 수〉

민감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재외도민증+명예도민	전출인구+명예도민	재외도민+명예도민
기존 비율	30,549	133,222	164,040
-20%	24,478	106,748	196,637
-10%	27,514	119,985	147,741
10%	33,585	146,459	180,339
20%	36,619	159,695	196,637

## 2. 예상 세입 추정

〈시나리오1의 민감도 분석〉

(단위: 천원)

기부금액	-20%	-10%	10%	20%
10	244,785	275,139	335,847	366,194
30	734,355	825,417	1,007,541	1,098,582
50	1,223,925	1,375,695	1,679,235	1,830,971
100	2,447,850	2,751,390	3,358,469	3,661,941
156	3,818,646	4,292,168	5,239,212	5,712,628
200	4,895,700	5,502,779	6,716,939	7,323,882
300	7,343,549	8,254,169	10,075,408	10,985,823
500	12,239,249	13,756,948	16,792,347	18,309,706
1,000	24,478,498	27,513,896	33,584,693	36,619,411
2,000	48,956,996	55,027,793	67,169,387	73,238,822
3,000	73,435,494	82,541,689	100,754,080	109,858,233
4,000	97,913,991	110,055,585	134,338,773	146,477,644
5,000	122,392,489	137,569,482	167,923,466	183,097,055

18

## 2. 예상 세입 추정

〈시나리오2의 민감도 분석〉

(단위: 천원)

기부금액	-20%	-10%	10%	20%
10	1,067,482	1,199,851	1,464,588	1,596,950
30	3,202,447	3,599,553	4,393,764	4,790,849
50	5,337,412	5,999,255	7,322,940	7,984,748
100	10,674,825	11,998,510	14,645,879	15,969,496
156	16,652,727	18,717,675	22,847,571	24,912,413
200	21,349,650	23,997,019	29,291,758	31,938,991
300	32,024,474	35,995,529	43,937,637	47,908,487
500	53,374,124	59,992,548	73,229,395	79,847,479
1,000	106,748,248	119,985,095	146,458,790	159,694,957
2,000	213,496,496	239,970,191	292,917,581	319,389,914
3,000	320,244,744	359,955,286	439,376,371	479,084,871
4,000	426,992,991	479,940,381	585,835,161	638,779,828
5,000	533,741,239	599,925,477	732,293,951	798,474,785

19

## 2. 예상 세입 추정

〈시나리오3의 민감도 분석〉

(단위: 천원)

기부금액	-20%	-10%	10%	20%
10	1,314,422	1,477,412	1,803,390	1,966,372
30	3,943,267	4,432,235	5,410,169	5,899,115
50	6,572,112	7,387,058	9,016,948	9,831,859
100	13,144,225	14,774,115	18,033,896	19,663,718
156	20,504,991	23,047,620	28,132,877	30,675,400
200	26,288,450	29,548,230	36,067,792	39,327,436
300	39,432,674	44,322,345	54,101,687	58,991,154
500	65,721,124	73,870,576	90,169,479	98,318,591
1,000	131,442,248	147,741,151	180,338,958	196,637,181
2,000	262,884,496	295,482,303	360,677,917	393,274,362
3,000	394,326,744	443,223,454	541,016,875	589,911,543
4,000	525,768,991	590,964,605	721,355,833	786,548,724
5,000	657,211,239	738,705,757	901,694,791	983,185,905

20

## 2. 예상 세입 추정

### 민감도 분석

- 분석결과 시나리오1의 경우 기부금액 10만원에 대해 최소 24억에서 최대 36억까지 기부금이 모금될 것이며, 시나리오2의 경우 10만원에 대하여 100억에서 159억원의 세입이 예측되며, 시나리오3은 10만원 기부 시 131억원에서 196억원으로 기부금이 예측됨
- 결론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은 최소 24억에서 최대 196억원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염명배(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함
  - 염명배(2019)는 일본의 고향사랑기부금 규모가 지방세 수입의 약 1%라고 하며, 이를 제주에 적용하면 제주의 2021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 1조 5,224억원의 1%인 약 152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1

## 2. 예상 세입 추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 뿐 아니라 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수반됨
- 즉, 기부자가 기부할 경우 90.9%는 국세에서 환급을 받으며 나머지 9.09%는 기부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함
- 따라서, 최소 기부금액은 기부금의 30%정도인 답례품비, 지방비 환급비 9.09%, 여기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답례품 관련 위탁비, 운영비 등의 비용을 상쇄할 만한 규모여야 함

22

## 3. 대응방안

- 기부자 유치방안
  - 1) 재외 제주도민 네트워크 구축
  - 2) 사이버 소통 공간 제공 및 관련 DB구축
  - 3) 애향심 향상과 기부를 위한 동기부여 확대
  - 4) 한달 살기 등 제주에 자주 방문하는 관광객 홍보 확대 등

23

### 3. 대응방안

#### 기금관리 및 운영방안

- 1) 기금운용의 투명성
- 2) 기존의 기금사업, 일반회계사업과 중복성 방지

- 기존 기금과의 교통정리 필요
- 현재는 기금 사용처 지정 어려움
- 향후 기금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부자의 적극적인 고향살리기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3조(기금의 용도)

-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②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2022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수 25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자활및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목외광고발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발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예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재난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

### 3. 대응방안

#### 답례품 선정

- 1) 기존 제주의 온라인몰 활용
- 2)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하여 답례품 선정 및 신뢰성 있는 공급업체 선정
- 3)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사용 필요가 있음
- 4) 고급화, 연예인 활용

- 당장 내년에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답례품 품목 선정, 업체 선정 등 준비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포인트제,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장기적으로 다양한 답례품을 제시하여 답례품 선택의 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 3.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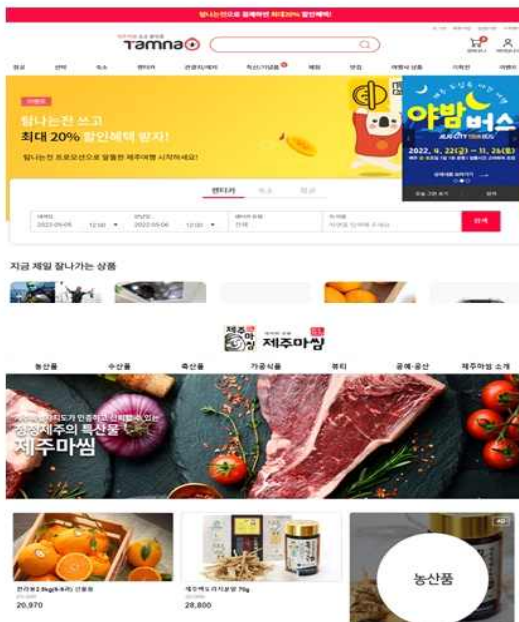
서귀포시 서귀포in정

카테고리	물품개수
서귀포감귤	24
농산물	47
수산물	30
축산물	46
가공식품	49
체험&관광	39
총합계	235

경제통상진흥원 이제주물

카테고리	물품개수
농산품	79
수산품	64
축산품	66
가공식품	270
화장품	43
공예품	19
생활용품	5
총합계	546

### 3. 대응방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탐나오

카테고리	물품개수
선박	12
관광지/레저	633
(특산/기념품) 농산품	96
(특산/기념품) 수산품	931
(특산/기념품) 축산품	98
(특산/기념품) 가공식품	154
(특산/기념품) 화장품/미용	76
(특산/기념품) 제주기념품	152
맛집	92
여행사 상품	2476
총합계	4,720

제주마שמ 물품현황

카테고리	물품개수
농산품	44
수산품	26
축산품	10
가공식품	97
총합계	177



### 3. 대응방안

제주의 계절상품

봄	여름	가을	겨울
벚꽃, 유채	수국, 메밀, 보리, 초당옥수수, 한치, 자리 들	해바라기, 감귤	동백꽃, 감귤, 대방어

대표 답례품 5,5,5 전략, 10, 10, 10 전략 또는 고향사랑100

### 3. 대응방안

구간	금액	농산물/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체험상품	계절상품
1구간	1만원 이하	당근, 비트, 브로콜리, 메밀가루, 메밀, 팥엿		목살, 오겹살, 육포, 소시지, 팥어묵	감귤 과즙세트	맛집	
2구간	1만원 초과~3만원 이하	레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표고버섯, 녹차 가루, 녹차 티백, 티, 꿀, 참기름세트	갈치, 참굴비, 고등어, 한치	재첩, 흑돼지, 목살, 오겹살	선크림, 오일, 세럼, 마유크림, 손기름, 한라산노트	청귤체험, 마나나파기, 쿠팡클래스, 가멜리아원 입장권, 패들보드, 산방산 탄산 온천, 진신안다, 디독스 족욕, 테마파크 입장권, 승마, 감귤마기 체험, 레일마이크, 호몰렛만들기 체험	
3구간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천혜향, 한라봉, 송화버섯, 참송이버섯, 꿀	옥돔, 고등어 혼합 선물세트, 한치, 은갈치	돈마호크 선물세트, 목살, 오겹살	화장품, 미용용품	바니케어, 페러글라이딩체험, 산방산 탄산온천, 스쿠버다이빙 체험, 스쿠버라이센트 교육	
4구간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옥돔, 고등어 혼합 선물세트, 한치, 은갈치	돈마호크 선물세트, 목살, 오겹살	화장품, 미용용품	렌터카 할인	
5구간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옥돔, 고등어 혼합 선물세트, 한치, 은갈치	돈마호크 선물세트	화장품, 미용용품	렌터카 할인	
6구간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옥돔, 고등어 혼합 선물세트, 은갈치	선물세트	화장품, 미용용품	여행사 상품	
7구간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옥돔, 고등어 혼합 선물세트	선물세트	화장품, 미용용품	여행사 상품	
8구간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선물세트	옥돔, 고등어 혼합 선물세트	선물세트	화장품, 미용용품	여행사 상품	
9구간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선물세트	옥돔, 고등어 혼합 선물세트	제주 흑우	선물세트	여행사 상품	
10구간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선물세트	옥돔, 고등어 혼합 선물세트	제주 흑우	선물세트	여행사 상품	

### 3. 대응방안

#### • 홍보 및 시스템 구축

- 1) 공항, 관광지 등을 활용하여 제도 홍보 필요
  - (수하물 인도장, 출국장, 대기장 등)
- 2) 답례품 및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구축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전담 기관을 마련하여 기부금 접수 및 정산, 연말정산 관리, 답례품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관 필요
  - 신뢰성·전문성이 있는 전담 기관 구축 필요
- 3)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낮을 경우 답례품비, 운영관리비 등 재정부담
  - 초기 비용을 낮추고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

30


### 4. 향후 논의사항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완벽히 해소시킬 수는 없으나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방식에서,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품을 개발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시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제주는 낮은 출향민 수에도 불구하고 천혜 자원의 보고인 제주의 장점을 활용하면 본 제도는 제주 지역경제 발전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될 것
  - 제로섬게임?
  - 기금 활용 방안
  - 성과관리
  - 시스템유지 관리, 장기적으로 지자체 운영 용이하게


31

감사합니다  
*jejoo@jri.re.kr*





## 참 고 자 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 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 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라는 표제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업무가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제한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한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제한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제한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2개월	4개월	8개월
2.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2개월	4개월	8개월
3.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1개월	2개월	4개월
4. 법 제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1개월	2개월	4개월
5. 법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호별 방문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2개월	4개월	6개월
6.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2개월	4개월	6개월
7.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1개월	2개월	4개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부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부금액	금 원(₩ )	
기부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답례품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 [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 [ ]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귀하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
-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담당 공무원)가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2.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답례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답례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160g/㎡)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품·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답례품의 선정 등)** ① 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품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7.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등에 따른 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품목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9. 제주자치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발행한 제주 지역화폐
  1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 ②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③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및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6조(기금의 재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

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9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 의 기금결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선정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가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이체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매 모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매 모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매 모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매 모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매 모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